

안전조업에 관한 질의응답

수산청 법무담당관

임 중 국

[문]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규제사항이 자주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 인지요?

[답] 수산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어업권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업권을 설정한 후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허가어업권 등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어업질서, 보상문제 및 어민의 반발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예견되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고시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78.5.25 수산청고시 제 5호로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규제사항”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건변동에 따라 동 고시가 1982.8.20 6차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어금지 구역

○ 모든 어선은 다음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이서(以西)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음.

- ① 북위 37도—55분 동경 124도—00분
- ② 북위 37도—00분 동경 123도—00분
- ③ 북위 36도—15분 동경 123도—30분
- ④ 북위 35도—05분 동경 121도—55분
- ⑤ 북위 30도—44분 동경 124도—30분
- ⑥ 북위 28도—40분 동경 123도—35분
- ⑦ 북위 27도—00분 동경 122도—15분
- ⑧ 북위 25도—00분 동경 121도—00분

2. 수산청장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과 원양어선의 출어 금지해역

- ① 북위 : 25도 이남해역
- ② 동해 : 동경 140도 이동(以東)
- ③ 태평양 : 동경 130도 이동(以東)

3. 동해 대화퇴어장 출어선 준수사항

동해 대화퇴어장에 출어하는 오징어 어선은 속초, 주문진, 울릉도, 동해 어선출입항통제소 또는 후포, 구룡포, 부산 어선출입항합동신고소에 신고한 후, 3척 이상 선단을 편성하여 가시거리 이내에서 조업하여야 함.

4. 기상특보 하달시 준수사항

- ① 안개주의보 시 : 출어선항해 주의
- ② 안개경보·파랑주의보 : 20톤미만 출항금지
- ③ 파랑경보 : 전 어선 출항금지
- ④ 해일주의보 : 전 출어선 항해주의
- ⑤ 해일경보 시 : 전 출어선 항해주의
- ⑥ 폭풍주의보 : 20톤미만 출항금지
- ⑦ 폭풍경보 시 : 전 어선 출항금지
- ⑧ 폭풍우주의보 : 20톤미만 출항금지
- ⑨ 폭풍우경보 : 전 어선 출항금지
- ⑩ 태풍통보 : 전 어선 항해주의
- ⑪ 태풍주의보 : 전 어선 출항금지
- ⑫ 폭풍경보 : 전 어선 출항금지

5. 대화퇴어장 출어선의 경유 해구

동해 대화퇴어장에 출어하는 어선은 출입항시 924 해구를 경유하여야 하며, 이 해구를 경유할 때에는 출항지 어업무선국에 항행 위치보고를 하여야 하고, 대화퇴어장에서 조업할 때에는 1 일

3회 위치보고를 하여야 함(비상시에는 1일 6회 위치보고)

6. 무전기개방 및 라디오 청취의무

① 무전기를 설치한 어선은 선적지 또는 인근 어업무선국에 교신가입하여야 함.

② 무전기를 설치한 어선은 매시간초 무전기를 개방하여 경보 및 대피지시와 기상통보를 청취하여야 함.

③ 무전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은 라디오를 비치하고 방송에 의한 일기해설, 기상통보를 청취하여야 함.

7.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이수

① 안전점검 : 출항전에 안전점검을 필히 수검하여야 함.

② 안전교육 : 수협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는 출어를 금지함.

[문] 최근 조업자제해역 안전조업지도요령을 수산청 훈령으로 제정하였는데 그 목적과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답] 최근 마산호등 피납사건의 원인은 어선원의 준법정신이 해이된데 그 주요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업자제해역(대화퇴, 황해 및 동지나해)에 대한 안전조업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대통령각하께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보고시 각하께서, 안전조업대책을 홍보하여 조업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게셔서 1982. 8. 20 수산청 훈령 제427호로 “조업자제해역(대화퇴, 황해 및 동지나해) 안전조업지도요령을 제정 발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정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목 적

수산업법 제50조 2항 및 동시행령 제55조 2항과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 어선의 안전조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적용범위

이 요령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 5 조 3항에 의한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③ 출어등록

각 시·도지사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에 의거 출입항 통제소 또는 합동 신고소에서 조업자제해역 출어선의 출어등록을 받아야 한다.

각 시·도지사는 출어등록현황(대장)을 작성, 매분기마다 수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협별 출어선 명부작성 비치

수협중앙회장은 조업자제 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명부를 수협별로 작성 비치하고 그 명부를 수산청,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협별 출어선 명부작성에 따른 세부사항은 수협중앙회장이 별도 정하여야 한다.

⑤ 안전점검

수협중앙회와 한국어선협회는 어선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시행한다.

⑥ 선단조업

출입항통제소 및 합동신고소는 대화퇴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하여 3척이상으로 선단을 편성하고 선단장선을 지명하여 출어시켜야 한다.

어업무선국장은 선단장선 유고시, 즉시 다른 어선을 선단장선으로 지명하여 어선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선단장선 특례

지구 및 업종별 수협장은 대화퇴해역에 출어하여 선단조업을 이행한 선단장선에 대하여는 위판수수료 2%를 감면하여 선단장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선단장선 위판수수료 2% 감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협중앙회장이 별도 정한다.

⑧ 어민교육

수협중앙회장은 대화퇴 및 동지나 해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하여 출어직전 최근 복피, 중공의 동향 등 시사성 있는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야 한다.

각 시·도·군 수산관계관은 수협의 주관하에 실시하는 출어직전 어민교육을 확인 감독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⑨ 승선 지도원 운영

수협중앙회장은 동, 서해 어로보호 본부장과의 협의하여 승선지도원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 승선지도원은 어업지도선, 어업무선국, 측

위국과 협조하여 어선측위업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수행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⑩ 대화퇴 안전조업지도 위원회

수산청에 대화퇴 안전조업 지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시·도에서는 시·도안전조업지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 운영지침은 각 시·도별로 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⑪ 신상필벌제 실시

조업자제선을 월선 조업한 어선을 신고한 자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시상은 관내 시·도 안전조업 지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산청장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시상금의 재원은 수산청, 수협중앙회, 지구 또는 업종별 수협에서 부담한다.

수협회장은 신고요령을 작성하여 지구별수협, 어선출입항통제소(합동신고소 포함) 각 어선에 배부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⑫ 범칙어선에 대한 조치

시·도지사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한 선박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당해 선박의 출항을 금지시키고 어업허가는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하며, 선장, 기관장 등 해기사면허는 해당 해운항만청장에게 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처벌은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송치하고 그 결과를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훈령위반시 구체적인 집행은 수산업법 제 20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요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문] 허가어업의 성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허가어업이란 어업조정상 필요에서 일정한 어업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받아 행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어업권의 설정 행위인 면허어업에 對한 어업으로서, 수산청장에 의한 허가어업과, 지방장관에 의한 허가어업이 있는데 전자의 어업에는 기선저인망어업, 트롤어업, 포경어업, 제 1종선망어업, 기선채낚기어업, 제 1종안강망어업, 기선봉수망어업, 패류채포어업, 잠수기어업 등이 있고, 후자에는 제 2종유자망어업, 제 2종안강망어업, 범선저인망

어업, 범선형저인망어업, 제 2종선망어업, 기선연승어업, 기선일본조어업, 해수(海獸)어업, 제 2종선인망어업, 해조채취어업, 투망어업이 있습니다(수산업법 제11조, 제12조 참조)

이 이외에도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수산업법 제13조), 허가어업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한도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수산업법 제14조).

허가어업은 권리의 설정(특허)와는 달리 금지의 해제인 점에서 많은 제약(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허가어업의 조업수역은 공해 또는 공유수면상에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다수인이 경쟁적 조업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어업질서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바, 그 조정을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제한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 행위자책임원칙이란 어떤 것인지요?

[답] 행위자책임원칙이란 형법상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예컨대 월선조업을 한 선장)의 성격에서가 아니라, 행위자의 개개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 그러면 고용인에 불과한 어선의 선장이 선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선장마음대로 월선조업한 경우에, 그 어선 소유자인 선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업허가 취소를 합은 행위자책임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아닌지요.

[답] 어선어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상 혼합허가로서 선장의 책임은 선주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즉, 어업허가(어선어업)는 수산업법 제11조제 1항 및 동법 제12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단순히 대인적 허가를 하는것이 아니고, “어선과 어구마다” 허가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어선어업에 대한 허가는 인적요소와 물적요소(어선)가 결합된 혼합허가로서, 선장의 범칙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자인 선장과 허가어업권 자체에 대한 양벌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행위자책임원칙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